

2차 행정쟁송법 답안 작성에서 주의할 사항

- 이패스노무사 박이준 강사 -

1. 제22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 시까지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은 자동폐기되었습니다.

따라서 저의 교재에 “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”으로 언급되어 있는 부분, 즉 ① 법정의항고소송(의무이행소송, 예방적 부작위소송), ②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부분에서 언급된 ‘행정소송법 개정안’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쓰면 안됩니다.

2. 작년에 제정된 「행정소송규칙」(대법원규칙)을 강의시간에 언급하고 법령을 배부해드렸으나, 다시 몇 가지를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 ※ 시험장 법전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

- (1)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그 지사나 지역본부 등 종된 사무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(제5조 제1항).
- (2)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(제6조). ☞ **종래 판례 법리였던 것임**
- (3)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(제9조). ☞ **종래 판례 법리로 소개되어 있었던 것임. 따라서 <허용 여부> 부분에서 학설 대립은 행정소송규칙 제정 전의 논의사항임을 유의함. 다만 <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>의 의미는 여전히 판례 법리가 유효함**
- (4)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종기는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. 다만,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,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 및 그 성질,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(제10조). ☞ **종래 실무상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던 것을 원칙적인 기간을 명시함**
- (5) 사정판결을 할 때 그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(제14조). ☞ **종래 판례로 소개되어 있었던 것임**
- (6) 조정권고 제도가 신설됨. ☞ 재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의 취하,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, 그 밖에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(제15조).
- (7) 그동안 법이론이나 재판 실무를 통해 정립된 당사자소송의 예시를 나열함(제19조)

3.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소변경 가능하다는 판례 있습니다(대판 2023.6.29. 2022두44262). ※ GS1 5회 참고자료(2월 5일) / GS3 4회 모의고사(7월 2일) 참고

- 끝 -